

제26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8. 11. 2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8 - 75
- 나. 제 출 자 : 황동현 의원 외 10명
- 다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2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2. 제정이유

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(안 제4조)
- 라.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,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(안 제5조 ~ 제9조)
- 마.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8. 11. 2. ~ 11. 7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단체를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다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 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1)[안제1조] 목적 :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

2)[안제3조] 적용범위

-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 시설 또는 단체의 범위를 보조 금액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
3)[안제4조]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

-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으로 구분
- 내용에는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 함

4)[안제5조~제9조] 표지판의 설치 대상, 장소, 비용부담 규정 등

-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
- 표지판 설치 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
5)[안제10조] 관리감독 및 평가

- 표지판 설치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6)부칙

-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가 시행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

다. 종합 의견

-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,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.

※ 2018년 본예산 기준 구비 보조금 5,789,300천원

-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하며, 각종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법령 및 사업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임
-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 대상 및 교부금액 결정의 투명성 재고는 물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공공성 강화,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통한 구의 보조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다만,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표지판의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칙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임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16조(교부조건)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